[기능] 경영기본
[규정]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규정
[규칙]

지속가능경영위원회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제 2 장 구 성

제 2 조 (구성)
제 3 조 (위원장)
제 4 조 (해임)

제 3 장 운 영

제 5 조 (회의의 소집)
제 6 조 (소집절차)
제 7 조 (결의방법)

제 4 장 권한 및 책임

제 8 조 (권한)
제 9 조 (의무)

제 5 장 기타사항

제 10 조 (통지의무)
제 11 조 (의사록)
제 12 조 (간사)
제 13 조 (경비)
제 14 조 (규정의 개폐)

부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HL홀딩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체제 구축을 통한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일층 제고하기 위해 계열회사간 내부거래를 점검하고, 사회적 가치와 주주 가치 증대를 위해 사회공헌 및 거버넌스와 관련된 주요 정책 또는 활동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상법 제393조의2에 의거 설치하기로 하고 그 구성, 운영 및 권한, 책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구 성

제 2 조 (구성)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포함하며,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 3 조 (위원장)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위원장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 4 조 (해임)

위원의 해임은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이사회 결의로서 가능하며, 이사회는 해임, 이사의 임기만료 또는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위원회에 결원이 생길 경우 지체없이 충원을 해야 한다.

제 3 장 운 영

제 5 조 (회의의 소집)

위원회는 매 반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소집절차)

위원회는 위원장이 5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단,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7 조 (결의방법)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4 장 권한 및 책임

제 8 조 (권한)

1. 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항으로 한다.
   가. 내부거래 보고 및 심의 : 위원회는 상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에 대해 보고를 받으며, 이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간사가 중요한 거래라고 판단하는 거래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5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위원회 결의로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
   나. 내부거래 세부현황 조사 : 위원회는 언제든지 내부거래 세부현황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조사할 수 있다.
   다. 내부거래 시정조치 요구 : 위원회는 법령 및 회사 규정에 중대하게 위반되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라. ESG 관련 활동 보고 및 심의 : 사회적 가치 증진 및 주주가치 개선을 위하여 위원회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와 관련된 주요 정책 또는 활동에 대해 보고를 받으며, 이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
   마. 기타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며, 이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

2.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직원이나 외부전문인력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된 경비를 지원한다.

제 9 조 (의무)

1. 위원회의 책임은 다음 각 항으로 한다.
   가. 선관주의 의무 : 위원회의 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나. 비밀유지 의무 :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경영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 회사의 비밀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다. 이사회 보고 의무 : 위원회는 회사가 법령 또는 규정에 중대하게 위반하는 내부거래를 한 경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기타사항

제 10 조 (통지의무)

위원회는 결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결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사회의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1 조 (의사록)

1.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3. 의사록 원본은 이사회 간사부서에서 보관한다.

제 12 조 (간사)

1.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2. 위원회 간사는 경영전략실 內 팀장 또는 임원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 13 조 (경비)

위원회의 회의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제 14 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위원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제 1 조 (제정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3일부로 제정 시행한다.

제 2 조 (개정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4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제 3 조 (개정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제 4 조 (개정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8월 13일부로 개정 시행한다.